

재외 한인체육단체 규정

제정	2016. 3. 21.
개정	2019. 5. 29.
전부개정	2021. 2. 4.
전부개정	2021. 10. 6.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13조4의 재외 한인체육단체의 지정 및 취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재외 한인체육단체의 지정 신청서류)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로 한다)로부터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재외 한인체육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 한인체육단체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3. 단체 소개서(연혁, 조직, 구성현황 등 포함)
4. 단체의 정관 및 제규정
5. 집행부 임원 명단 및 취임승낙서
6.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7.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8. 회원단체 현황(지회, 회원종목단체 등)

제 3 조(재외 한인체육단체의 지정 요건) ① 체육회의 재외 한인체육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의 재외 한인체육단체 설립 필요성이 인정될 것
2. 해당 국가 재외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단체일 것
3. 회원종목단체 또는 지회(지역체육회)가 5개 이상 설립이 되어있을 것

4. 설립된 지 최소 1년이 경과한 단체일 것
-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재외 한인체육단체로 지정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 4 조(재외 한인체육단체의 지정 절차) ① 정관 제13조4에 따라 체육회의 재외 한인체육단체로 지정 받고자 하는 체육단체는 체육회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체육회는 제3조의 지정요건을 확인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외 한인체육단체로 지정한다.

제 5 조(재외 한인체육단체의 지정 취소)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 유일의 한인체육단체로서 대표성이 불분명한 경우
2. 제1호의 대표성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단체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3. 단체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재외 한인체육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
4. 신임 단체장이 해당 국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5. 체육회 정관, 본 규정을 위배하여 재외 한인체육단체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 재외 한인체육단체가 해산한 경우 체육회의 재외 한인체육단체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 6 조(조직 및 운영) ① 재외 한인체육단체는 해당 국가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 ② 재외 한인체육단체는 독자적 명칭을 사용하되, 영문 명칭에는 KSOC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가 포함된 일체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 7 조(재외 한인체육단체의 권리와 의무) ① 재외 한인체육단체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한민국 내에서 추진되는 체육회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체육회가 주최하는 전국종합체육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할 권리

② 재외 한인체육단체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체육회의 정관,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체육회로부터의 재정 지원금을 관련 규정, 지침 및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정산할 의무
3. 단체의 대표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추천서를 받아 체육회에 변경사항을 제출할 의무

제 8 조(선수단 파견) 제7조제1항제2호의 선수단 파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대회의 참가요강에 의한다.

제 9 조(예산지원 및 정산) ① 체육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외 한인체육단체의 행정보조비 일부와 전국체육대회 출전과 관련된 경비의 일부 및 체육회가 승인한 현지 한인체육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을 지원받은 재외 한인체육단체는 체육회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2. 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추천서

단체명	명칭	(한글)		
		(영문)		
	주소		연락처	
대표자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p>본 단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3조4에 의거, 대한체육회 재외한인체육단체 지정 신청하고자 하며 이에 승인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재□□□□대한체육회 회장 (인)</p>				
<p>본 재외공관은 상기 단체를 대한체육회 재외한인체육단체로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주□□□□ 대한민국대사 (인)</p>				

대한체육회장 귀하